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비상임심판관의 해촉사유 중 ‘심신장애’를 ‘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·정신적 질환’으로 개정함(안 제14조제4항제1호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최 기 도)